

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신청인 (출자자 또는 출자법인)	① 상호(법인명)		② 사업자등록번호		
	③ 성명(대표자 성명)		④ 생년월일		
	⑤ 주소(본점 소재지) (전화번호:)				
피출자 법인 (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)	⑥ 법인명		⑦ 사업자등록번호		
	⑧ 대표자 성명		⑨ 생년월일		
	⑩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신청내용	납부이연 또는 과세이연 금액	⑪ 과세연도		년	월 일부터
				년	월 일까지
		⑫ (거주자)양도소득 산출세액			
		⑬ (내국법인)양도차익 상당액			

현물출자 명세

⑬ 자 산 명	⑭ 소재지	⑮ 면적(㎡)	⑯ 취득일	⑰ 취득가액 (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)
계				
⑱ 현물출자일	⑲ 양도가액 (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)		⑳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(=⑲-⑰)	
계			㉑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7조의9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거주자인 경우: “⑫ (거주자)양도소득 산출세액”란에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적습니다.
2. 내국법인인 경우: “⑬ (내국법인)양도차익 상당액”란에 “㉔”란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.